

# 포교대상 운영에 관한 령

불기2542(1998)년7월 8일 제정·공포  
불기2546(2002)년10월 8일 전면 개정  
불기 2546(2002)년 10월 8일 공포  
불기2555(2011)년 7월 5일 전면개정·공포

제 1조 (목적) 이 영은 포교분야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개인 및 사찰, 단체에 대하여 시상하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이하 '포교대상'이라 한다)의 기준, 대상, 선정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종류) 포교대상의 종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대 상
2. 공로상
3. 원력상

제 3조 (추천자격) 다음의 각호의 자는 제5조에서 정한 분야별로 포교에 뚜렷한 공로와 종단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개인 및 사찰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교원장에게 포교대상을 요청할 수 있다.

1. 교구본사주지
2. 종단등록 신도단체의 대표자
3. 종단소속 포교단체의 대표자

제 4조 (추천기준) 포교대상의 추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단스님 및 재가불자 : 공적분야 5년 이상 활동
  2. 사찰 및 단체 : 종단등록 및 설립경과 5년 이상
- 다만, 포교대상 대상의 공적기간은 20년 이상으로 한다.

제 5조 (추천분야) 포교대상의 추천 분야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계층포교분야  
유아,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 등
2. 직능포교분야  
군, 경찰, 직장직능 등
3. 문화체육포교분야  
미술, 성보, 건축, 음악, 문학, 학술, 연예, 스포츠 등
4. 사회포교분야  
환경, 통일, 국제, 인권, 장애인, 복지, 여성, 노동 등
5. 매체 포교분야  
방송·언론, 신문, 잡지, 출판, 인터넷 등

제 6조 (공고 및 추천절차) ① 포교원장은 포교대상 시상일 60일 이전에 포교대상 시행공고를 종단 기관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공고내용을 교구본사 및 종단등록 신도단체, 종단소속 포교

단체, 전국 사찰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추천자가 포교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고된 기한 내에 포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2. 포교활동 공적서
3. 후보자 이력서

제 7조 (심사) 포교대상 후보자 선정에 따른 심사는 다음의 각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포교대상 담당자는 접수된 후보자에 대한 종단신도등록 및 경력사항 등 공적조사를 실시한 후 공적조서를 작성한다.
2. 포교대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자를 심의하고 수상자를 선정한다.
3. 심사위원회 회의 개최시기는 시상일 20일전에 한다.

제 8조 (심사위원회) ① 심사위원회는 포교원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9인 이내로 하며,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포교원장
  2. 총무원 총무부장
  3. 교육원 교육부장
  4. 포교원 포교부장
  5. 중앙총회 포교분과위원장
  6. 중앙신도회장
  7. 포교원회의에서 3인을 추천을 받아 포교원장이 위촉한다.
- ② 위 ①항 7호에 의거 위촉된 심사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에 한한다.
-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포교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의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제 9조 (시상기준) ① 본 종단소속스님 및 재가불자로, 각 분야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 한다.

② 포교대상의 수공기간은 20년 이상인 자로 하며, 공로상은 10년 이상, 원력상은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제10조 (이중포상의 금지) ① 포교대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동일한 공적으로 추천할 수 없다.

② 종단에서 수여하는 일반포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동일한 공적으로 추천할 수 없다.

제11조 (시상) 포교대상의 시상은 매년 1회 실시한다.

제12조 (시상자) 포교대상의 시상자는 상별로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대 상 : 종정
2. 공로상 : 총무원장

3. 원력상 : 포교원장

제13조 (포상금) 포교대상의 수상자에게는 상별로 부상과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4조 (규칙)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포교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불기 2546(2002). 10. 개정]

제 1조 (시행일) 이 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불기 2555(2011). 7. 5. 개정]

제 1조 (시행일) 이 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